
Ⅵ.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Ⅲ장과 Ⅳ장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가계에 어떠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V장에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져올 가계 및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에 대해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협을 공공부문이 모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부문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역할 분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본장에서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금융이 거시경제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기능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가계위험에 대해서는 가계가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 가계위험 관리

가. 노후소득보장: 사적연금

1) 현황 및 문제점

장수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후소득보장은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기초 하에서 연금제도의 운용 틀을 구축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 주제는 향후 우리나라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일찍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OECD 주요국

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조기퇴직, 저출산 심화 등에 대응하여 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현 근로세대의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될 경우 이는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융은 장수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제고가 고령화리스크 대응관점에서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표준근로자기준)을 분석한 결과(가입기간 35년),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실질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대체율)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노후소득보장 수준 40% 대와는 실제 많은 괴리가 있다.

〈그림 VI-1〉 연금제도에 의한 실질(예상)소득대체율

3층 개인연금	10 ~ 20%	개인연금	7.5%
2층 퇴직연금	30%	퇴직연금	12.5%
1층 공적연금	30%	국민연금	35%

World Bank 등 국제기구 권고안:
60 ~ 70% (공적 + 퇴직)

우리나라의 실질소득대체율:
55%

- 주: 1)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제도에 의해 시현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
2) 실질 소득대체율은 35년 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불입한다고 가정하여 산출함.

즉, 표준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12.5%, 개인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7.5%(월 20만 원 가입)인 것으로 분석되어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의한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GDP에서 차지하는 사적연기금의 비중이 5.52%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즉 GDP 대비 세제적격 개인연금자산과 퇴직연금자산의 비중은 각각 4.92%, 0.6%에 불과하고,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전체 수입보험료(2008년 기준) 중 민영연금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선진국의 30% 보다 낮은 25.3%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표 VI-1〉 사적연금시장의 규모(GDP 대비)

연도	명목GDP(천억 원)	개인연금자산/GDP(%)	퇴직연금자산/GDP(%)
2001년	6,514	3.51	-
2002년	7,205	3.61	-
2003년	7,671	3.72	-
2004년	8,269	3.75	-
2005년	8,652	3.91	-
2006년	9,087	4.02	0.1
2007년	9,750	4.42	0.3
2008년	10,239	4.92	0.6

주: 세제적격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규모의 합을 의미함.

2) 국제비교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는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보다 제고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거나 공적연금의 일부를 적용 제외하는 등 공사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체계를 통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일본은 공적연금의 일부를 적용하여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은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함으로써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VI-2〉 노후소득보장의 국제비교(2008년)

국가	제도형태	퇴직연금 기능
미국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영국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적용제외
일본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적용제외
독일	DB형	공적연금 보완
스웨덴	DB형(DC형 전환)	공적연금 보완
프랑스	DB형(명목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호주	DC형	공적연금 완전대체
캐나다	DB형	공적연금 보완
네덜란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덴마크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핀란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스위스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이탈리아	DC형	공적연금 보완

주: 제도의 형태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의미함.
 자료: 류건식(2008).

둘째, 퇴직연금의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연금의 가입을 일부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의 강제 가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호주, 아이슬란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경우 청년 노동자 및 신규 시장 가입자에 한하여 민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

고 있어 근로자의 45~60% 가량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호주, 칠레, 홍콩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으로 완전대체하기 때문에 법으로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

〈표 VI-3〉 퇴직연금 가입형태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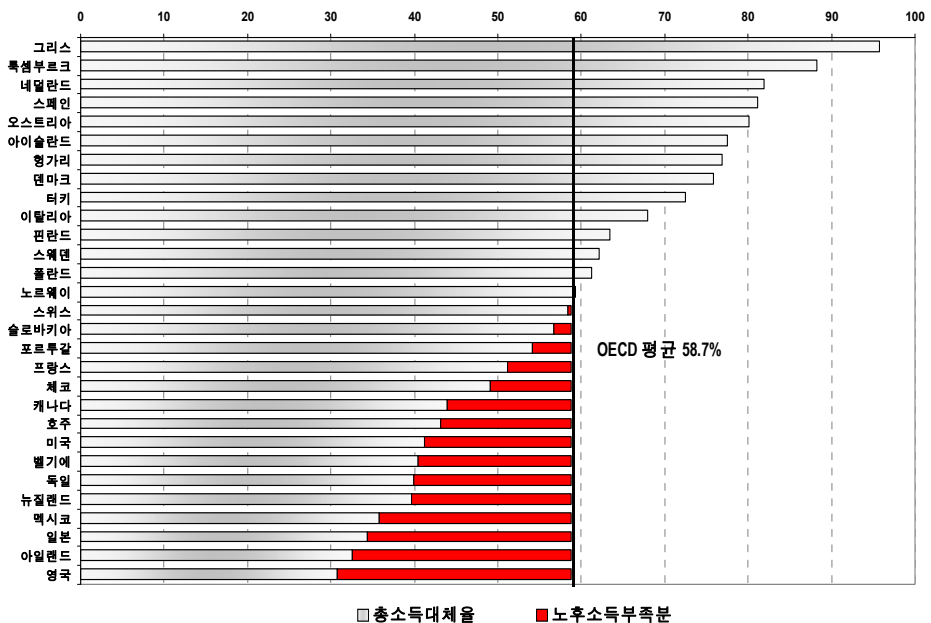
국가	제도형태	가입률	보험요율
호주	MO/P	> 90%	9%
덴마크	MP	> 90%	1%
헝가리	MP	58%	8%
아이슬랜드	MO	> 90%	10%
멕시코	MP	31%	6.275%
네덜란드	QMO	> 90%	-
노르웨이	MO	> 90%	2%
폴란드	MP	49%	7.3%
슬로바키아	MP	45%	9%
스웨덴	MP	> 90%	2.5%
스위스	MO	> 90%	7~18%
영국	VO	43%	9%
미국	VO	47%	9%
캐나다	VO	39%	8.5%

주: M=강제가입, V=임의가입, QM=반강제가입, O=기업, P=개인.
 자료: 류건식(2008).

특징적인 것은 이들 국가 모두 연금개혁 차원에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확정기여형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을 대체(부분대체)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며,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단체협약에 의한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연기금이 대부분 산업별로 설치된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여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소득비례연금은 법정퇴직연금으로 각 산

업별로 관리한다. 더욱이 퇴직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므로 가입률이 100%일지라도 축적된 기금액은 미미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역할을 담당하며 임의가입이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비중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발달은 미미한 편이다.

〈그림 VI-2〉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부족



주: 노후소득부족분은 각국 공적연금소득대체율과 OECD 평균소득대체율과의 차이임.
 자료: OECD(200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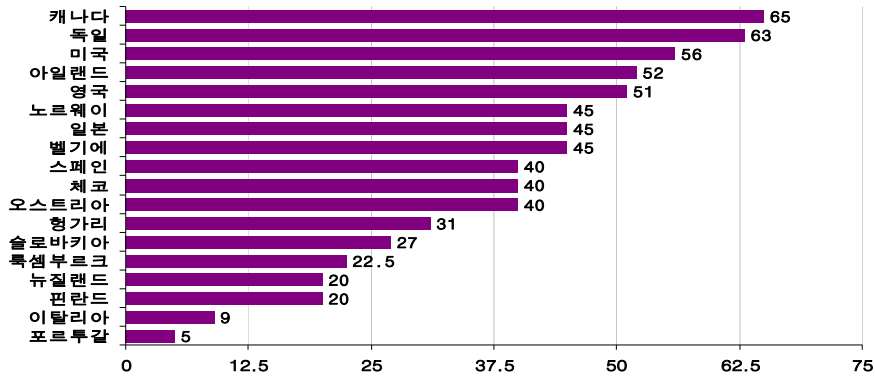
셋째, 영국 등처럼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부족분은 개인 또는 퇴직연금에 의해 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연금가입이 임의가입형태를 띠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의 경우 임의연금의 가입률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대체로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

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사적연금 가입률 여부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그림 VI-3〉 사적연금가입률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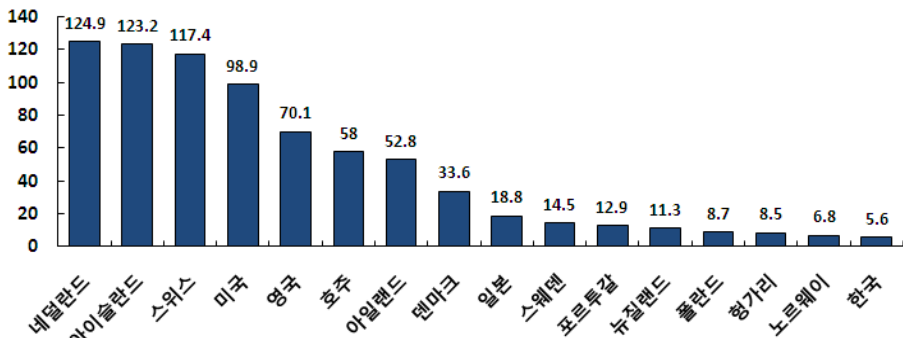
(단위: %)



주: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임.

이상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변화 등에 힘입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는 사적 연금금이 GDP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도 사적 연금금이 GDP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VI-4〉 GDP 대비 사적 연금 자산비율



주: 우리나라는 2008년 말 기준임.
자료: OECD(2009b).

이와 같은 사적 연기금의 역할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 제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표 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의 높은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OECD 주요국의 사적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 속에서 보험회사 등 금융의 장수리스크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제고가 가능하였다 할 수 있다.

<표 VI-4> 연금제도의 의한 노후소득보장수준

(단위: %)

보장구분		WB 권고수준	미국	영국	일본
1층	국민연금(a)	30	41	31	34
2층	퇴직연금(b)	30	38	39	26
3층	개인연금(c)	10~20	10(가정**)		
합계(a+b+c)		70~80	89	80	70

자료: OECD; KDI; 보험연구원.

3) 개선방안¹⁰⁸⁾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가 등으로 장수리스크(노후소득보장) 관리를 위한 관리자로서 금융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는데 금융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금융의 역할을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정립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금융의 역할로는 ①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리스크 인수자로서 역할, ② 다양한 연금리스크 헤지 상품 도입·개발 등으로 적절히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108) 여기에서는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정책당국측면에서의 역할보다는 보험회사 역할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개자로서의 역할, ③ 연금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사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노후소득보장수준)이 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통제자(리스크의 분산)자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그리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 리스크 인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 중심의 다양한 상품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기준으로 연금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이 단지 17.4%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인 1985년 33.3%, 2000년 이후에는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금시장의 성장 속에서 변액연금, 고연령 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ies) 등이 고령화의 주력 연금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VI-5〉 401(k)형 은퇴시점 수익보장 연금상품 (예: 미국)

구분	Quaranteed Income for Life	Income Flex
운용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8개의 지정된 주식 및 채권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여 보장 기준 금액 보장 가입자는 최소한 5년간 이 상품을 유지했을 경우 59.5세부터 연간 5%씩 보장기준금액을 인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의 푸르덴셜이 직접 운용하는 주식 및 채권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여 보장기준금액의 연간 최소 이율 5%를 보장 가입자는 최소한 5년간 이 상품을 유지했을 경우 65세부터 연간 5%씩 보장기준금액을 인출가능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수수료: 적립금기준 연 0.35% 운용수수료: 적립금기준 연 1.01 ~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수수료: 적립금기준 연 0.95% 운용수수료: 적립금기준 연 0.55 ~ 0.8%
운용사례	John Hancock Financial Service	Prudential

또한 영국의 경우 은퇴 후 연금시장은 1996년 이후 3배 이상 성장하여 2007년에는 140억 파운드 규모이며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시장의 성

장은 특히 소득인출(Income Drawdown)연금인 무보장연금(USP: Unsecured Pension)¹⁰⁹⁾, 종신연금, 즉시연금, 표준하체연금(Enhanced and Impaired Annuities)인 강화형 연금의 성과에 기인한 바 크다. 일본 역시 노후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연금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액연금보다 변액연금의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에 일찍이 진입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연금상품 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조합된 새로운 연금상품 도입 및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에서의 성장기반 마련과 더불어 DC형 상해보험 도입, 개인퇴직계좌(IRA)형 연금보험개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연금상품 개발, 일시납 즉시연금 활성화, 강화형 연금상품, 자산연계형 연금개발,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은 노후소득보장상품을 인수한 금융기관의 고령화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리스크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은 연금수급자가 기대수명보다 오래 살게 되어 발생하는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스왑(Longevity Swaps¹¹⁰⁾, DB플랜 바이아웃(DB Plan Buy-Out¹¹¹⁾)등과 같은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장수리스크를 헤지하려는 경

109) 영국의 경우 DB형의 경우 대부분 종신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DC형의 경우 급여의 일부에 대해서만 일시금 수령을 허용(급여의 25%까지는 비과세로 일시금 수령 허용)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이러한 정책이 연금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0) 장수스왑: 연금부채를 전부 매입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확정지급금(고정지급금: 기대수명에 기초하여 확정)과 장수와 관련된 지급금(실제수명에 연계된 지급금)을 교환한다.

111) 영국에서는 DB플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의 Buy-Out(DB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회사들은 보험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퇴직연금부채를 이전)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IFRS제도가 정착화되는 2010년대 중반이후 DB채택기

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액이 급격히 부족해지는 상황을 우려해 특히 영국 등은 퇴직연금에 장수스왑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국 보험회사는 장수스왑 등 퇴직연금 연계 파생상품의 개발과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현재 영국에서 장수스왑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장수스왑계약의 담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보험회사와 투자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장수리스크 헤지에 대한 금융기법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Lucida, Paternoster,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Rothesay Life 등 보험회사이다.

〈표 VI-6〉 장수스왑 제공 금융회사(예: 영국)

금융회사명	장수스왑	바이아웃	업종
Lucida	○	○	보험사
Paternoster	○	○	보험사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	○	보험사
Goldman Sachs(Rothesay Life)	○	○	투자은행 보험자회사
Credit Suisse	○	×	투자은행
Deutsche Bank	○	×	투자은행 보험자회사
JP Morgan	○	×	투자은행
UBS	○	×	투자은행
Swiss Re	○	×	재보험회사
AEGON	×	○	보험사
AIG	×	○	보험사
Aviva	×	○	보험사
Legal & General	×	○	보험사
MetLife	×	○	보험사
Prudential	×	○	보험사

자료: Lane Clark & Peacock, Pension Buyouts 2009,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

업들 중 퇴직연금채무가 부담이 되는 회사들이 서서히 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DB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80%에 이르고 있고 퇴직연금시장이 성숙기로 진입하여 머지않아 퇴직연금급부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DB형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처럼 퇴직급여제도 단일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금 가입의무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의 장수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첫째, 장수리스크 관리시장의 규모를 예측하여 다양한 장수리스크 헤지 관련 상품개발 등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수리스크 및 가격산정을 위한 적절한 모형 설계 및 데이터 축적, 장수리스크 관련 지수(Longevity Index)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DC형과 연계된 은퇴시점 수입보증형 상품(예: Quaranteed Income for Life, Income Flex)¹¹²⁾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DB형 퇴직연금이 감소하면서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저축단계인 퇴직 전 적립단계에서 수입보증형 상품의 시장 잠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¹¹³⁾. 이에 따라 적립기간 동안 수입보증옵션을 부가하는 등 DC형 퇴직연금 내 수입보증형 상품의 설계가 장수리스크의 헤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기간 동안 수입보증옵션을 부가하는 형태 또는 퇴직 후 체계적인 연금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는 제도 내 상품개발(Hybrid 401(k) Plan, In-Plan Annuity 등)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투자수익률 제고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수준(실질소득대체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리스크 통제자(리스크의 분산)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35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투자수익률이 1.54%에서 3%p 증가하는

112)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105개의 설문조사 대상회사 중 13%의 회사가 관심을 나타내어 2007년에 비해 1.6%p 증가하였으며, Prudential의 Income Flex 상품은 2009년 4월 말 현재 약 130개 회사의 직원들이 가입하여 약 1억 6천만 달러의 적립금을 기록하였다.

113) 일반 수입보증형 상품으로는 근로자 퇴직시점에 적립액으로 연금, 뮤추얼 펀드, 생존보험가입, 일시납 즉시연금 등을 들 수 있다.

경우 퇴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12.5%에서 29.3%로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 VI-7〉 투자수익률에 따른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투자수익률	연금가입기간		
	25년	30년	35년
1.54%	9.4%	11.0%	12.5%
2.54%	12.0%	14.3%	16.5%
3.54%	15.1%	18.5%	22.0%
4.54%	19.1%	24.0%	29.3%

주: 1) 투자수익률 1.54%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시 사용한 초기수익률 데이터임.
2)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제도에 의해 시현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

이러한 점에서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는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연금자산 배분전략(연금 ALM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시점에 원하는 투자실적을 얻기 위한 투자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 펀드(Life Cycle Fund)형 투자상품 등을 개발하여 수익률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¹¹⁴⁾. 미국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401K¹¹⁵⁾의 가입자 중 라이프사이클 펀드로 운영하는 가입자 비율이 31% 이상이며¹¹⁶⁾ 2009년 말 라이프사이클 펀드의 자산액은 전년대비 45.3% 증가한 약 2,55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¹⁷⁾.

114)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장기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투자자산의 배분을 기간별로 세밀하게 조정하는 장기투자상품으로 ① 다양한 투자자산의 배분, ② 극단적인 자산배분 회피, ③ 자동재투자, ④ 위험변화에 대한 자동적인 투자 조정 등의 특징이 있다. 사전에 결정된 날짜와 위험등급에 따라 보수적, 보통, 공격적 자산배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기간 경과 시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동으로 자산을 재분배하게 된다. 또한, 퇴직시기를 결정하고 기간에 따라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에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자산배분을 변경할 수 있어 자산배분에 대한 이해와 자산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115) DC형 연금제도의 일종으로서 종업원이 자신의 계좌로 소득 중 일부를 각출하면, 기업주가 나머지 반을 퇴직장려금으로 각출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종업원 개개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운용하는 연금제도로서 1980년대 말까지 주로 생명보험 회사의 개인연금이나 은행의 신탁상품에 운용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뮤추얼펀드로 투자되는 자금이 급성장하였다.

116) Deloitte Consulting LLP, Annual 401(k) Benchmarking Survey: 2005/2006 Edition.

또한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규제환경의 변화로 퇴직연금의 적립비율이 감소되어 연금재정의 건전성 악화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우려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변동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 ·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금자산 투자 시 자산위주의 운용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 등이 요구된다.

〈표 VI-8〉 전통적 운용과 부채 중심 운용과의 차이

구분	전통적 운용	부채중심 자산배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운용 고수익 • 모든 기간 동안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며, 비용의 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를 중심으로 한 투자를 행하여 적립잉여 및 적립 부족을 통제
리스크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익률을 해당부문의 지수 또는 S&P500과 같은 대표지수와 연계하는 등 자산의 변동성만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지수와 연계하지 않고, 연금계리사가 평가한 연금펀드의 부채와 연계하는 등 연금채무 변화에 대응한 펀딩비율의 변동성을 고려
무위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자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

즉 자산과 부채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요인에 의하여 변화하므로 퇴직연금 적립비율의 변동성이 크고 예상치 못한 초과부담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적립금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부채 중심 배분전략(LDI: Liability Driven Investment)이 가시화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어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 금융은 장수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장수리스크의 인수자 · 전가자 · 통제자)과 기능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정책당국 역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모수적 개선과 더불어 공사연금 간의 역할 분담체계와 같은 시스템적 개선이 고령화 리스크 대응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차

117) ICI(2009).

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금제도의 모수적 개선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부체계의 개선, 연금세제체계의 개선, 적립금 운용체계의 개선, 연금지급보장체계의 개선, 적립금 운용형태의 개선 등이,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연금 운용방법의 다양화, 개인연금 이전제도의 보완과 저소득계층 연금가입에 대해 실질 수익률이 향상되도록 소득공제방식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적 개선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특수지역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걱정 및 실질 노후소득 보장 수준 등에 기초한 역할분담 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리스크관리자로서의 금융의 역할과 리스크감시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질 때 사적연금의 활성화에 의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은 보다 제고될 것이다.

나. 노후건강보장: 민영의료보험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은 예측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¹¹⁸⁾자 수는 2002~07년까지 6년 동안 2배 증가하였다(박종연 et al., 2008). 고령자의 국민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전체 인구보다 높고, 고령자의 본인 부담금 증가세는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적보험의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보장은 제한적이어서 예측치 못한 노후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은 의료비지출의 위험에 노출된다. 2008년 고령자의 개인의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한 비율을 추정해 본 결과 2007년과 동일 수준인 5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V장 참조). 고령자의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령자 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이 2007년에 10.8%로 조사되고 있으나 공적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

118) 노인성질환은 크게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으로 구분하였다.

여대상자는 고령자의 3.3%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은 충분한 노후건강보장을 위하여 공적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민영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서비스 미충족의 원인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해외 자료를 보면 보험가입자는 의료접근성이 높아져 미가입자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KCMU, 2008; KFF, 2007; Center on an Aging Society, 2000; Joseph J. Sudano Jr, PhD, and David W. Baker, MD, MPH, 2003; Baker et al., 2001). 보험 산업은 민영의료보험이 예측치 못한 의료비지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를 검토해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노인건강상태와 의료비부담 현황

우리나라 고령자의 90% 이상이 각종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취약한 건강상태에 있다는 조사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선우덕 외, 2009; 김혜련 외, 2006; 선우덕 외, 2005; 오영희 외, 2005; 도세록 외, 2004; 선우덕 외, 2004).

〈표 VI-9〉 고령층의 본인인지 만성질병 수

(단위: %)

연령	없다	1개	2개	3개 이상	계(명)
65~69세	10.3	20.9	18.9	49.8	1,214
70~74세	7.9	15.6	17.4	59.1	903
75세 이상	8.7	13.4	20.7	57.2	9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¹¹⁹⁾.

119) 변용찬(2009)를 재인용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90% 이상이 각종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 취약한 건강 상태에 있다. 65~69세에서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갖은 사람이 49.8%에 달했고 1개 이상 갖은 사람은 89.6%에 이르렀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75세 이상의 경우 만성질환을 지닌 사람은 91.3%에 이르렀다.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수는 2002~07년도까지 6년 동안 2배 증가하여 52만 6천 명이였다. 절대적인 수의 증가와 함께 고령자중 노인성 질환자의 비중 또한 2002년에는 6.8%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10.8%로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고령자의 노인성질환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노인성질환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는 2002년 2,405억 원에서 2007년에 8,995억 원으로 3.7배 증가하였다(V장 참조).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본인부담액이 2002년에 1,835억 원이었고, 2007년에 6,329억 원으로 6년 사이에 3.4배 증가하였다. 진료실인원 1인당 본인부담액은 2007년에 120만 원으로 6년 전에 비해 69.7%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성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은 고령자에 대한 급여비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본인부담금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들은 노후건강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보험산업은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상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보험금 지급 체계 전반에 걸쳐서 정비가 필요하다.

2) 민영의료보험의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허가의료와 미허가의료(임의비급여의료라고도 하며 신의료기술의료 등이 해당)로 구분하고 다시 허가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되는 의료인 보합적용의료가 있고 부합되지 않는 의료인 법정비급여의료가 있다. 건강보험적용의료는 다시 ① 건강보험급여의료, ② 일부본인부담의료(법정본인부담

금), ③ 전액본인부담의료로 분류할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약관상 명시된 보장제외항목을 제외하고 임의비급여의료를 포함한 모두를 보충적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장기간을 보장하는 상품은 100세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노후건강보장을 준비하는 개인들에게 민영의료보험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품의 내용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그동안 보험회사별로 보장내용이 상이했던 상품들이 2009년 10월 주요사항에 대해서 표준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품들을 비교 평가하기에 용이해졌고, 보험회사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환자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장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공제액 및 보장한도를 통일하였다. 셋째, 상해 및 재해로 회사 간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었으나 상해로 통일하였다. 넷째, 면책사항 등 보장범위를 통일하였다. 다섯째, 외래와 처방조제약을 분리하여 보장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보장내용과 관련하여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부분을 보장하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민영의료보험에서는 임의비급여를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임의비급여를 포함시킬 경우, 의료공급자에 의한 급여부분의 임의비급여부분으로의 전환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과도하게 상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이에 대한 심사평가의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는 상태이다. 심사평가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임의비급여부분에 대한 심사는 경험데이터와 정교한 지급심사 체계를 갖추어야한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반면, 임의비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임의비급여부분에 대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의비급여부분은 신의료기술 등을 포함하여 고급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고급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이 임의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임의비급여부분을 보장하되 임의비급여서비스에 대해 심사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중복해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중복해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중복가입자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중복가입의 방지 및 중복가입자의 해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211만 명(금융보험통신, 2010. 1)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우체국보험이나 농협보험 등 유사보험의 가입자의 중복가입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체계적인 중복가입방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중복가입자라도 보험금의 청구를 한 회사에 하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체계적인 지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0월 이전에는 유사한 형태의 상품임에도 회사별로 약관이 상이하였다. 1천만 명 이상이 이러한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 있고 향후 이 점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운영상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보험회사는 중복 가입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각 보험회사의 보장비율(비례보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상품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2009년 10월에 상품이 표준화되어 이미 정책적으로는 개선되기는 했지만 향후 이러한 문제는 표준화 이전의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지급사유가 소액으로 빈번히 발생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한 후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팩스나 방문을 통하여 보험금을 상환 청구하는 체계(상환제)이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번거로운 청구 절차 및 비용 발생, 소액보험금은 청구를 포기), 보험회사에게는 서류접수 등의 행정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피보험자의 권익 침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고령자가 팩스를 보유하거나 보험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더더

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청구(제3자 청구제)하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조용운·김세환, 2008; 조용운·김경환, 2010).

마지막으로, 실손형 보험은 상환제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지급심사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이 지급을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운영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역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의료비의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은 실손 보험료의 상승을 초래해 피보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심사평가가 가능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개선방안

성공적인 노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 건강보장 문제를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이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노후 건강보장을 위해서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상황이고 민영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그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후에는 가처분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민영의료보험의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65세 이후에는 민영의료보험료가 급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5세 이후의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한 노인의료저축계좌(SMSA: Senior Medical Savings Account)¹²⁰⁾제도 등 노인인구의 민영의료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120) 중장년기에 의료저축계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적립하게 하고 적립된 재원의 지출은 65세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인의료저축계좌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어서 65세 이상의 과잉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다.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Evans, 1974)를 개인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세대 간 소득이전 문제가 최소화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은 개인들의 자조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고령자에게 어려움이 많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제3자 청구제로 전환하여 고령 소비자의 편의제고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에 대한 통계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합리적 위험률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건강보험은 통계 집적을 통해 고령자를 위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비 지급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 고령자의 급증하는 의료비 관리를 위해 현실적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고 지급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 노후건강보장: 장기간병보험

노인인구의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인인구 중 노인성질환자의 비중이 2007년에 10.8%로 조사되고 있으나 공적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는 노인인구의 3.3%에 불과하다. 2010년 급여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4.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증의 환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개인은 충분한 노후건강보장을 위하여 공적보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병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보장내용

장기간병보험(LTC: Long-Term Care)은 이동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일상장애

상태나, 기질성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항상 보호자가 돌봐야 하는 치매 상태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회사는 경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2003년 일본 위험률을 기초로 장기 간병보험을 도입하였다. 2008년 현재 주계약으로 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6개사이다. 위험률의 변경이 가능한 위험률변경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개 일시금 혹은 매월 연금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회사는 동경해상의 개호위험률을 보정하여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현재 주계약으로 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3개사이다. 주로 노인성 치매간병비를 보장하며, 대개 1천만 원 한도에서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명보험상품은 ‘치매 상태’ 혹은 ‘일상생활장해 상태’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보험상품은 ‘치매 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다. 두 산업의 지급사유가 내용상 동일하나 생명보험에서는 면책기간(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없는 등의 상품 내용에 차이가 있다. 생명보험의 「일상생활장해 상태」는 일상생활장해보장책임 개시일인 계약일로부터 90일 동안은 보장하지 않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보장하는 유지기간을 두고 있다. 손해보험에서는 면책기간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치매 상태’ 또는 ‘활동불능 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혹은 180일 이상의 유지기간이 있다.

나) 실적 현황

〈표 VI-10〉 간병비 보장보험 위험보험료 실적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손해 보험	상해 간병	33	93(183.6)	200(114.5)	244(22.3)
	질병 간병	68	82(19.5)	110(35.5)	131(18.4)
	상해/질병 간병	195	186(-5.0)	184(-0.3)	212(15.0)
	소계	296	359(21.6)	494(37.5)	587(18.7)
생명 보험	장기간병	1,142	1,335(16.9)	1,615(21.0)	1,926(19.2)
계		1,438	1,694(17.8)	2,109(24.5)	2,513(19.1)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간병보험의 위험보험료 실적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하여 FY2007에 2,513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9.1% 증가하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FY2007 손해보험회사의 간병보험 위험보험료 실적은 587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간병보험 위험보험료 실적은 1,900억 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9.2% 상승하였다. 장기간병보험 등 보험을 활용해 요양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 문제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정액형을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민영장기요양보험의 잠재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공·사 협력방안, 민영부문의 역할과 발전방향이 정리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급여대상자가 65세 이상의 3.3%에 불과하여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성질환자의 절대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비중도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액이 2002년에 비해 2007년 3.4배 증가하여 개인의 재정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충분한 노후건강보장은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장기간병보험의 판매실적이 두 자리 수 성장을 하고 있는 등 보험을 활용해 요양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기간병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상품개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장기간병보험 상품이 최근에 일본의 경험위험률을 들여와 개발되기 시작했고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경험 데이터의 축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것은 다양한 정액형 상품의 개발, 실손형 상품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보험료 산정 시 안전 할증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치매 상태’ 혹은 ‘일상생활장해 상태’, ‘활동불능 상태’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양 업계 간 장해판정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장기간병보험은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높은 상품인데 이를 적절히 통제할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실손형 상품은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보장범위가 치매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개선방안

장기간병보험은 현재는 정액형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지만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향후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 보험은 역할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공적보험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면서 공적보험의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소득이나 개인적 필요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추가 또는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공적보험제도 하에서 급부를 받더라도 시설급부의 경우에는 20%, 재가급부의 경우에는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간병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보장하면서 급부를 추가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경증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부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급부를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보충적인 민영보험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므로 장기간병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실손형 보험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를 중심으로 장기간병보험을 운영하면 소비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시장성이 있고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노후 건강보장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간병보험은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실손형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간병비용의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무엇보다도 공적 보험이 보장하는 부분과 보장하지 않는 부

분의 경험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장기간병보험은 공적 보험의 경험 데이터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장애상태에 대한 등급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현재 장애분류표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 지급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판정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보험계약자와 이증판정에 따른 분쟁과 신뢰손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준으로 보험급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보험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에 집중되어 있는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보장범위를 노인성질환 등으로 확대해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조용운·이종욱, 2009).

라. 자산관리서비스

1) 현황 및 문제점

자산관리서비스는 ‘복합적인 재무계획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재무계획을 설계하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재무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를 실행해 주는 서비스’라고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관리서비스에는 자산가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과 더불어 자산가치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관련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단일 신탁계약에 은행상품, 금융투자상품과 더불어 보험상품까지 담을 수 있는 보험신탁이 자산관리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¹²¹⁾.

121) 보험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보험을 다른 금융상품들과 결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생애국면 차원에서는 준비국면, 축적국면, 소진국면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재무목표 차원에서는 기본생활보장, 평균생활유지, 생활수준개선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즉 평균생활유지를 위해서는 금융투자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생활수준개선을 위해서는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포함되는 한편, 기본 생활보장을 달성하려면 보험상품이나 연금의 활용이 요구된다.

〈표 VI-11〉 자산관리 시 고려되는 복합적 재무목표

재무목표	기본생활보장	평균생활유지	생활수준개선
위험-수익	무위험-원금보장	저위험-저수익	고위험-고수익
투자대상	보험, 원금보장자산	시장포트폴리오	고수익자산
관리방식	위험전가	분산투자	위험추구
비교대상	물가상승률	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자산관리서비스로 분류되는 기준은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다(MMI, 2008). 해외에서 자산관리서비스는 한 계좌에서 단일 운용전략을 수용하는 SMA(Separately Managed Account)에서 시작하여 한 계좌에서 복수 운용전략을 수용하는 MDA(Multi-Discipline Account)를 거쳐 궁극적으로 한 계좌에서 복수 운용전략 및 금융상품 유형을 수용하는 UMA(Unified Managed Account)로 진화하고 있다.

〈표 VI-12〉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운용자산	6,000	8,500	10,800	17,400	14,500	16,500
운용자산 성장률	30.4	41.7	27.1	61.1	-16.7	13.8
스폰서 수	120	200	180	211	248	230

자료: Private Banking KPI Benchmark, Scorpio Partnership.

보험회사가 기존 보험영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신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기정(2009), 진익(2009)을 참조한다.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동안 2.75배 증가하였다. <표 VI-12>는 지난 5년 동안 성장해 온 자산관리서비스 제공 스폰서 수와 운용자산 규모 추이를 보여준다. 2004년 6조 달러에 불과하던 자산관리서비스 운용자산 규모는 2007년 17조 4천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4조 5천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16조 5천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2.4%에 달한다.

최근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대형 스폰서들 사이에서 인수 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 영역에 새롭게 진입한 금융회사의 수도 증가하고, 자산관리 규모도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는 주로 신탁계약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볼 때 아직 SMA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MDA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복잡성, 효율성, 맞춤형 관점에서 자산관리서비스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 VI-13> 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단위: 조 원)

구분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금액	비율(%)	
겸영사	은행	149.6	147	142.9	150.9	155.2	43.4
	증권	24.3	27.5	36.5	54.5	69.4	19.4
	보험	0.2	0.3	0.3	0.4	0.4	0.1
	소계	174.1	174.8	179.7	205.8	225	63.0
부동산신탁회사	84.6	95.9	105.7	124	132.2	37.0	
합계	258.7	270.7	285.4	330	357.4	1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국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자산관리서비스의 형식적인 면인 개별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고객별 계좌가 개별적으로 관리되면 그 내용이나 구조에

서 표준형 집합투자자와 차별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서비스로 간주된다. 이는 국내에 집합투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신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간접투자문화 때문이라고 보인다.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개별성을 제외하면 신탁과 집합투자 사이에 별다른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논리적인 면에서 보거나 해외 금융선진국 사례를 볼 때, 자산관리서비스는 복합적인 내용과 맞춤형 구조를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내 금융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차원에서 집합투자와는 명확히 차별화되는 자산관리서비스가 요청된다는 점에서도 복합성과 맞춤형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개선방향

국내에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① 복합성 제고를 위한 보험신탁의 도입, 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판매인프라 개선, ③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신탁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신탁의 도입이 요구된다. 자산관리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고객의 소비수준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은 전 생애 중 축적국면과 소진국면에서 고객이 직면하는 투자위험, 사망위험, 장수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생성하는 것이다. 투자위험은 은행상품이나 금융투자상품, 사망위험은 보험상품, 장수위험은 연금상품을 통해 관리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의 결합이 자산관리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상품,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연금상품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매 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방형-판매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개방형-판매플랫폼이 구축되면, 기능결합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복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심서비스는 스폰서가 스스로 공급하되 부수서비스는 외

부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방형-판매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객-스폰서(판매플랫폼)-운용자 사이에 정보교환이 표준화되고 자동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STP(Segmentation, Targeting, and Positioning)와 외부-STP를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넷의 지원 범위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적합성원칙에 기초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투자정책서 작성과 표준성과보고기준의 활용이 요구된다. 자본시장법 시행, 보험업법 개정을 계기로 적합성원칙이 폭넓게 도입되었다. 동 원칙에 따르면 스폰서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프로그램의 위험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고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만을 고객에게 권유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적합성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과 스폰서 사이에 상황인식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때문에 업무절차의 개선을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폰서가 신의성실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사후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외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관행으로서 정착된 투자정책서 작성과 표준성과보고기준인 GIPS(Global Investment Performance Standards)¹²²⁾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자산소진기 고객에게 적합한 것은 개별적 이해요구에 대응한 다품종 소량생산인 반면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에게 적합한 사업모형은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소품종 대량생산이다. 이러한 차이가 조정되려면 고객과 금융회사에서 자문서비스를 토대로 한 맞춤형 설계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신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신탁에는 투자일임제도의 투자기능과 더불어 보장기능까지 연계될 수 있다¹²³⁾.

122) GIPS는 미국 국제재무분석사(CFA)협회가 제정한 운용성과 공시표준이다.

123) 신탁을 활용하면 고객의 이해요구에 따라 권리자 속성(재산관리능력, 신용능력, 자연

그런데 우리나라 신탁제도를 보면, 고객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에 보험 및 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편¹²⁴⁾,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에서도 보험 및 연금이 제외되어 있다¹²⁵⁾. 이는 우리 신탁제도가 투자기능에 집중하여 신탁가능재산 및 신탁재산 운용대상을 금융투자상품·예금 중심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해외 금융선진국에서는 신탁이 투자기능과 더불어 보장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신탁가능 재산 및 신탁재산 운용대상이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법체계가 포괄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신탁재산 종류, 수탁금전의 운용대상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유형·무형, 법적·형평법적(legal or equitable)을 묻지 않고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¹²⁶⁾. 현재 신탁업무는 각 주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최근 각 주의 신탁업무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¹²⁷⁾.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험신탁’이 자산관리서비스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신탁회사들의 수익 중 상당부분이 ‘보험신탁’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우도 유형·무형, 법적·형평법적을 묻지 않고 식별될 수 있는(identifiable) 것이라면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¹²⁸⁾.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2006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제

인 성격 등이 전환될 수 있으며, 단일(복수) 권리자가 복수(단일) 권리자로 전환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재산권 속성과 관련하여 고객이 가족의 장래에 대비하고자 재산권 향유 시점을 미래로 연기하거나, 기존 재산권의 성질/형태를 전환하거나, 개별 재산들을 결합하여 포괄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를 참조한다.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를 참조한다.

126) Bogert, Oaks, Hansen and Neeleman, the Law of Trusts, 7th ed, 2001, p.27과 한기정(2009)를 참조한다.

127) 2000년 Uniform Law Commissioners의 주도로 UTC(the Uniform Trust Code)가 제정되어 보급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128) Oakley, Parket and Mellows: the Modern Law of Trusts, Sweet & Maxwell, 9th ed, 2008, p. 17과 한기정(2009)를 참조한다.

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신탁재산의 범위는 신탁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2006년 개정된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범위를 “일체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 제3항)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¹²⁹⁾. 한편 보험업법(제99조)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즉 생명보험회사는 고유업무(제97조) 및 부수업무(제98조) 이외에 고유업무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탁업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신탁을 인수하는 업무 영위할 수 있다(제99조 제3항). 특히 ‘보험금신탁’이 신탁업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차이를 참조하여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험업법에 보장기능까지 포괄하는 “보험신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서는 신탁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표준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차등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거시경제위험 관리

가. 금융중개기능 및 경쟁력 제고

1) 금융중개기능 제고

오래전부터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많은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에 강한 상관관계(correlation)뿐만 아니라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인과관계(causality)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gano, 1993; Levine, 1997; Haber,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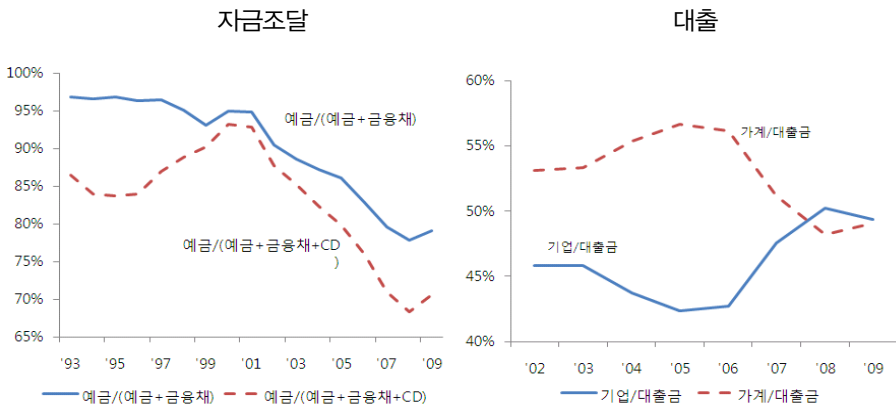
경제학 문헌에서는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를 강

129) 최수정(2007), 『일본 신탁법』, 진원사, p. 14와 한기정(2009)를 참조한다.

조하고 있다. 첫째, 금융발전은 금융중개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저축을 투자로 흘러가게 한다. 즉, 금융이 발전하면 생산적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발전은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한다. 즉, 다양한 투자기회가 존재하지만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은 투자기회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것이다. 셋째, 금융발전은 가계의 저축 유인을 높인다. 즉,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면 이전보다 위험대비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저축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금융중개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중개기능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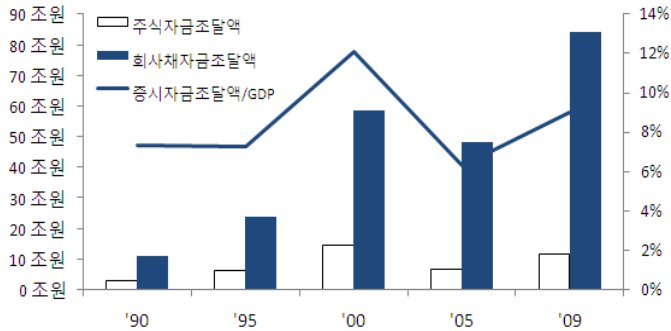
〈그림 VI-5〉 은행의 자금조달 및 대출



자료: 한국은행, ECOS.

먼저 은행의 경우 자금조달 측면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말 95% 수준에서 2009년 말 8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자금조달에 CD를 포함할 경우 동 비중은 70%대로 더욱 떨어진다. 예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대출 측면에서도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많이 공급된다는 면에서 금융 중개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림 VI-6〉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한국은행, ECOS.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규모를 보면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규모가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채 및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GDP 대비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은 10% 내외로 1990년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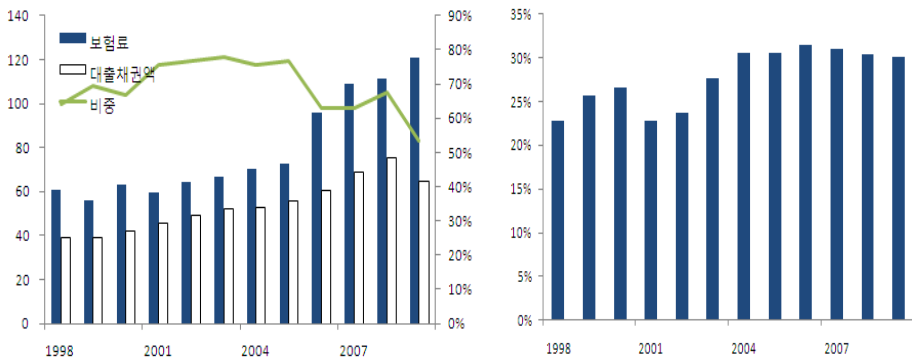
〈그림 VI-7〉 보험료 대비 대출채권액과 담보대출 비중

보험료 대비 대출채권액

(단위: 조 원)

담보대출 비중

(단위: %)



자료: 보험통계연보.

보험의 경우 은행과 금융투자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기능에 의한 신용대출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업권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그동안 신용평가 기준이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으로 심사자의 신용평가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신용평가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둘째, 회사채의 경우 반복되는 신용사건 및 기업의 회사채 발행 축소 등으로 발행시장에서 회사채 비중은 낮은 상황이고, 증권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인해 회사채의 단순중개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신용위험 분석, 인수 및 중개 등을 포함한 본질적인 투자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기업의 대출수요가 위축되었다.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위축됨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정보생산 및 모니터링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관계대출 (relationship lending) 취급 유인이 감소하였다.

넷째, 금융회사의 안정성 중시 경향이 높아졌다. 은행이나 보험이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관계대출 대신 거래대출(transaction lending)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 담보가치와 신용보증 등을 중시하였다.

다섯째, 대형화 및 겸업화로 대리인 비용이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조직이 복잡해질 경우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ger and Udell, 1996). 그 동안 겸업화가 확대됨에 따라 각 업권은 고유 영역 이외에 수익성이 높은 부문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

여섯째, 단기수익성 위주의 경영 행태도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 기준의 개선과 대출심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신용평가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경우 우량기업의 상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강종구(2005)에 따르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이 높거나 부실여신비율이 낮을수록 기업대출, 중소기업

대출 및 설비자금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은행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개선을 통한 신인도를 제고하여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 자금조달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신기능을 유지, 강화하여 기업부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며 고수익채권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 경쟁력 제고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경우 첫째,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2009년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녹색성장비전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제시한 바 있다¹³⁰⁾. 현재 신성장산업의 규모나 현황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발표되지 않으나 정부의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 수출, 고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¹³¹⁾.

130)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신성장산업을 발굴함에 있어 시장성과 파급효과가 주요 선정기준으로, 그리고 녹색성장 연관성이 보조 척도로 활용되었다. 또한 신성장산업을 3대 분야로 구분하여, ①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인 녹색기술산업, ②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인 첨단융합산업,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③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인 고부가서비스산업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는 3대 신성장산업에 해당하는 신성장동력의 예를 보여준다.

〈표〉 신성장산업 분류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자료: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2009).

131) 우선 부가가치 총액이 2008년 기준 연평균 12% 증가하는 가운데, GDP 대비 부가

신성장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신성장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민간부문의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어 있지 못하며, 신성장산업의 경우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결과, 국가 경제 수준에서의 편익과 개별 시장 참여자의 편익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은 고유의 기능(금융중개·위험관리·가격발견·선별감시·정보생산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조성자(market facilitator)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미 성장가능성이 성숙된 분야¹³²⁾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시장조성자 및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인다. 반면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 금융부문이 고유의 금융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위험이 높은 분야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 분야의 경우, 획기적인 시장창출과 발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여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기본 방향은 금융부문과 정부가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정부와 금융부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금융부문의 경험과 전문성이 단기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¹³³⁾.

둘째, 금융의 금융중개기능이 제고될 경우 서비스산업으로서 금융의 경쟁력

가치 비중은 2008년 24%에서 2018년 38% 수준으로 1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장동력 분야 수출액은 2008년 기준 연평균 약 18% 수준으로 증가하여, 10년 후 약 9,0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2008년 대비 향후 10년간 약 35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해당산업 종사자가 연평균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32)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 수 있다.

133) 예를 들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 제도개선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 시 정부가 위험인수,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민간 금융부문은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위험인수 등에 주력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 개선될 것이다. 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업 특히 생산자서비스가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과 같은 생산자서비스의 생산성이 제고될 경우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업의 발달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발달 정도는 2009년 비교대상 국가 중 23위에 불과하였다. 이 또한 2008년 19위에서 4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교역규모가 세계에서 10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금융중개 기능이 제고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될 것이다.

〈표 VI-14〉 금융의 경쟁력 비교

국가	2009년	2008년	국가	2009년	2008년
영국	1	2	네덜란드	8	9
호주	2	11	일본	9	4
미국	3	1	덴마크	10	n/a
싱가포르	4	10	프랑스	11	6
홍콩	5	8	독일	12	3
캐나다	6	5	벨기에	13	17
스위스	7	7	한국	23	19

자료: World Economic Forum,

나. 고령친화산업 지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다. 고령친화제품 등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①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②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③ 노인요양 서비스, ④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⑤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⑥ 노인을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⑦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⑧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 VI-15〉 고령친화산업 분류

부문	전략 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원격진단/진료 및 휴대형 다기능 건강 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 및 실내외 이동지원 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노인용 콘텐츠 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연금,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 주택 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 한방 기능성식품, 노인용 한방 화장품, 노인성 질환 한약제제 개발
농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교통산업	저상서비스, 고령자 감응 첨단신호기, 형광표지판
식품산업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순환계용약, 대사성 의약품
장묘산업	화장 및 납골용품, 웰엔딩 준비 및 체험교실, 개장 및 이장 서비스
의류산업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선용 레저스포츠웨어, 체형보정형 이너웨어
교육산업	일자리 교육 및 훈련

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분류체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개념적으로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¹³⁴⁾과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¹³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은 고령친화산업으로서 14대 부문 34개 품목을 제시하고 있다¹³⁶⁾. 이와 같은 14대 부문은 고령친화산업의 모태산업으로서, 해당 산업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 중 고령자¹³⁷⁾라는 특정 유형의 수요자에 특화된 것을 고령친화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의의는 ① 동 산업이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 ②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세대의 건강·재무·생활 위험해결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③ 정부의 재정 및 저성장위험을 해결할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표 VI-16〉 고령친화산업 수요자 추계

(단위: 만 명)

구분	2002년	2010년	2020년
건강노인	75	110	150
장기요양 필요 노인	300	420	610
수발자	30	42	61
베이비붐 세대	980	1,300	1,600
합계	1,385	1,872	2,421

자료: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134)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이 예이다.

135) 금융, 문화 및 여가,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이 예이다.

136) 2005년 1차로 8대 부문 19개 품목을 선정하였고, 2006년 2차로 6대 부문 15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를 참조한다.

137)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며, 미국 인구통계국에서는 55~64세(the olders), 65~74세(the elders), 75~84세(the aged), 85세 이상(the very old)로 분류하고 55세 이상을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경제적 활동의 은퇴시점인 60세를 기준으로 고령자를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인 수요자에게 특화하는 산업인 만큼,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더불어 수발자,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생) 등이 주요 수요층이다. 그런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에 의하면, 고령친화산업의 수요자가 2002년 기준 1,385만 명에서 2010년 1,872만 명, 2020년 2,42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통계시스템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용품산업과 노인요양서비스로 분류하는데, 고령친화용품의 시장규모는 2006년 0.68조 원에서 2008년 1.34조 원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보건산업통계시스템에서 시장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의 고령친화용품 중, 개인건강 의료용품 시장규모가 2008년 기준 5,677억 원으로 가장 크며, 배변용품 1,614억 원, 기능저하예방용품 1,166억 원 순이다.

〈표 VI-17〉 고령친화용품산업 시장 현황

(단위: 억 원)

시장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판매	5,159	7,605	6,719
수출	1,130	3,286	3,312
수입	534	721	3,447
합계	6,823	11,612	13,478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여건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주요 수요층인 고령자의 수는 이미 적정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고령자들의 구매력이 낮은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고령친화산업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이유로서 ① 인식 부족, ② 시장성에 대한 불신, ③ 제도적 제약, ④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① 고령친화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시장성 제고, ③ 제도 개선, ④ 장기성장성 확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내부역량을 축적

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실행방안이 요구된다. 각 방향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은 <표 VI-18>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초기에 정부 주도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민간 재단법인이나 기업이 고령친화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고령친화산업은 수익자 부담을 기초로 하여 노인복지라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동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부문의 능동적 역할을 통해 그러한 유인 제공이 가능하다.

<표 VI-18> 개선 방향 및 실행방안

기본 방향	세부 실행방안
인식제고	① 종합정보제공체제 구축 ② 산업화지원센터 확대 ③ 생활체험서비스사업 확대
시장성 제고	①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상품·서비스 개발 ② 정부 공적 서비스와의 연계 ③ 클러스터 기반 사업모형 발굴 ④ 핵심 전략품목 관련 기술 개발
제도 개선	① 표준화 ② 인증제도 ③ 전문인력 양성 ④ 규제 완화 ⑤ 고령자 고용 확대
장기 성장 가능성 확보	① 주요 무역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② 관련 국제표준 선점 ③ 체계적인 정부 지원 마련

금융부문과 고령친화산업의 관련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시장공급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수요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이다. 시장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고령친화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사업 영위 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협의의 자금중개기능으로서 주로 은행이나 창업투자회사가 담당하는 역할이고, 후자는 협의의 위험관리기능으로서 주로 보험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인다.

시장수요와 관련하여서는 주요 수요층인 고령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는 것과 고령친화상품·서비스를 대가로 지급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달성이 가능한데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고, 후자는 민영보험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바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예로서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¹³⁸⁾, 실제로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장기요양보험인 개호보험이 도입된 후 동 보험이 적용되는 관련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령친화산업이 급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¹³⁹⁾.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는바, 동 보험을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면 운영실태(급여대상자 범위, 서비스수요 대비 인프라 수준, 서비스 질 등)의 지속적 평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138) 이 밖에도 보험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고령자용 주택 개조, 실비 고령자용 임대주택시장에 진출하는 것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

139) 관련 시장규모가 2001년 39조 엔에서 2005년에는 90조 엔 수준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상품대여, 방문요양시설 관련 영리법인 수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日本 厚生労働省, 「平成17年 介護サービス施設・事業所調査結果の況」을 참조한다.